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인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061 발의연월일: 2025. 2. 11.

발 의 자:이인선·고동진·배준영

김태호 · 김정재 · 이달희

김기현 · 성일종 · 정동만

김위상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연구개발특구는 첨단기술 개발과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.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연구개발특 구 내 입주한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통해 기술 혁신과 산업 생태계를 지원하고 있음.

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, 연구개발특구의 투자 유인 과 첨단산업 육성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임.

이에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세제혜택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의2).

법률 제 호

#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"2025년 12월 31일"을 각각 "2031년 12월 31일"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12조의2(연구개발특구에 제12조의2(연구개발특구에 입주 입주 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) ① 「연구 법인세 등의 감면) ① -----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 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 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 업장(이하 이 조에서 "감면대 상사업장"이라 한다)에서 생물 산업 · 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업(이하 이 조에서 "감면대상사업"이라 한 다)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 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 다. 1.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」 한 특별법」 제9조제1항에 따 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 ---2031년 12월 31일-----정을 받은 첨단기술기업 2.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 2. ----한 특별법」 제9조의3제2항에

따라 <u>2025년 12월 31일</u> 까지	<u>2031년 12월 31일</u>		
등록한 연구소기업			
② ~ ⑩ (생 략)	② ~ ⑩ (현행과 같음)		